목 포 시

시 보

낭만항구 목포 ROMANTIC PORT MOKPO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15호 2023. 10. 16.(월)

공 고

○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
○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3
○ 목포시 시립국악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0

회람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목포시 공고 제2023-1662호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11.

목 포 시 장

1. 전부개정이유

○ 체육시설의 위치 및 용어의 정의 수정 및 위탁 시설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하여 투명성 확보 및 체육시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및 관리 하여야 함.

○ **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안 제4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일정 규모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 하여야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2항에 위탁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설의 개방** (안 제5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체육시설은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하여야 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개방 시간 및 이용방법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함.

○ **사용허가** (안 제8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방 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용료** (안 제14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 **사용료 감면** (안 제16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 할 수 있음

○ **사용료 반환** (안 제17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회원의 권익을 보호 하여야 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이용료는 반환 하여야 함.

○ **사용자의 배상** (안 제19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취소 된 경우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 하여야 함

○ **관리 위탁** (안 제23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하여야 함.

○ **수탁자 선정기준** (안 제2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수탁자 선정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수탁자의 의무** (안 제25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시설물 등의 설치** (안 제2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2항에 따라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및 원상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됨.

○ **지도·감독** (안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재산관리 및 변동 사항 기록 등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 현황 등을 보고 하여야 함.

○ **운영비 지원** (안 제28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음.

○ **운영요원 등** (안 제29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규모에 따라 체육지도자 및 안전요원을 배치 하여야 함.

○ **위탁계약 해지** (안 제3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2항에 따라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음.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5. 관련부서 의견

○ 감 사 실(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기획예산과(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1. ~ 10. 31 (21일간)
※ 목포시조례규칙심의회 : 2023. 11. 1. (수) 예정

8. 기타 참고 사항

○ 전국체전 시설물 관리에 대한 사항은 미반영 (부서별 협의후 추진)

9.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31일까지 목포시장(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8302), 직접 방문
다. 의견제출처 :(58608) 전남 목포시 대양로 286,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061-270-8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 1부. 끝.

붙임1 개정 조례안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이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써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은 그에 부속된 음향, 조명, 체육기자재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광고·게시·공연·관람·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자"는 일정 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는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는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는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다.
6. "운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수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단체"는 특정 단체 또는 같은 목적으로 하루 기준 20명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사용하거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기본료"는 기본사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는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10.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11. ”성인“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며 이중 65세 이상의 노인은 경노우대 대상으로 한다.
12. ”군인“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13. ”체육경기“는 공인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외“는 본 조항 외의 경기 및 행사 등을 말한다.
14.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운영 할 때 에는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알려야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대회 및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시설 종류별 사용료, 이용종류 및 이용방법
3.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④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

와 전항의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휴관일)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만, 전용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추석날(연휴 포함)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의해 사용 3개월 전부터 7일 이내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사용전일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 하고자 할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신청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경조행사
2.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시의 보조·후원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행사·경기(사용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자가 우선한다)
5.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시 등 행사

제10조(사용자의 부대시설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료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수익 목적 행사 등)
4. 허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5조에서 규정한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

다.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제13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하 계	동 계	비 고
조 기	05:00~08:00	06:00~09:00	
주 간	08:00~19:00	09:00~18:00	
야 간	19:00~23:00	18:00~23:00	

②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1항의 야간 사용시간은 조명시설이 설치된 체육시설에 한한다.

④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또는 불가항력으로 연기 되었을 때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 "연습", "방송", "부속시설", "상행위", "중계"로 구분하여 별표 2 부터 별표 6 까지와 같다. 다만,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연습사용료를 징수 할 때에는 각 시설별로 자동발매기 및 수동매표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시간당 전용료 기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행사)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① 전용자는 사용료 전액을 전용일 3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전용일 3일 미만을 남겨두고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을 연간 계속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월 사용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습사용자는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야간 계속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며, 체육 이외의 행사 및 연습사용하는 때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초과 시간당 :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2. 초과 게임당 :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④ 추가사용료 및 중계방송·상업(광고 등) 기타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사용 후 다음날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⑤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사용료 감면)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은 별표 7과 같다.

제17조(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연습사용권은 미사용의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배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
   가. 사용개시 7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나. 사용개시 2~6일 전 취소 : 사용료의 100분의 90
   다. 사용개시 당일 취소 : 사용료 반환 없음
2. 사용 예정자 또는 사용·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가. 사용개시 7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나. 사용개시 2~6일 전 취소 : 사용료의 100분의 90
   다. 사용개시 당일 취소 : 사용료 반환 없음
3.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

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의 양도 금지 등) ①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장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자의 배상)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손해에 대하여는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관람료) ①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초청장, 초대권 제외)을 발행하는 경우 전용사용료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다만, 관람권수입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체육행사,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에 있어서는 관람권 매표액에서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수입액의 10퍼센트를 사용료로 한다.
2. 프로경기를 포함한 일반행사에는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수입액의 20퍼센트를 사용료로 한다.
3. 초대권(초청장)은 전체관람권의 100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한다. 다만, 시민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관람권은 관람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전용자 부담으로 발행한다.

③ 전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9조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1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연습권은 체육시설의 각 매표소 및 자동발매기를 통하여 매표한다. 다만, 전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및 입장권의 예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매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도 사전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 판매 등 검인이 곤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시장은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체육시설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안전요원)없이 입장하는 자
5. 전염성 질환자 및 만취된 자

제23조(관리 위탁) ① 시장은 체육시설(공공부지 및 공원 내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시설별 전부를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제24조(수탁자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1. 수탁자의 적격성,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2. 재정운영의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조정능력 등

제2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설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체육시설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부주의·태만·과실 등으로 인한 화재·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제26조(시설물의 등의 설치)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실외에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제2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하는 시설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③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8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요원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강사, 안전요원, 자원봉사자 등의 운영요원을 위촉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체육지도자가 체육시설 내에서 강습을 하는 경우 수입에 대한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위탁계약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이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

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1호 및 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날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31조(회원제 운영) ①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객들에게 셔틀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목포실내체육관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목포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목포실내체육관 파크골프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유달시립정구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유달시립테니스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유달검도체육관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유달게이트볼구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목포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목포시 옥암동 산 256-1번지
·부주산 테니스장	목포시 옥암동 산 271-1번지
·목포실내체육관 궁도장	목포시 양을로 397번길 90(상동)
·부주산 축구장	목포시 옥암동 산 17번지
·부주산 족구장	목포시 옥암동 산 12-1번지
·부주산 산악자전거경기장	목포시 옥암동 산 26-1번지
·영산호 카누경기장	목포시 남악로 22-5(옥암동)
·부주산 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목포시 부주로 132-12(옥암동)
·부주산 국민체육센터	목포시 부주로 312(옥암동)
·목포 야구장	목포시 대양동 1262번지
·목포 리틀 야구장	목포시 옥암동 1375번지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제1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 시설별	사용 시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 고
		평일	토·공 휴일	평일	토·공 휴일	
목포실내 체육관	1일	90,000	110,000	180,000	200,000	야간사용 5할 가산
실내수영장	1일	200,000	250,000	250,000	300,000	
다이빙장	1일	100,000	150,000	150,000	200,000	
정구장, 테니스장 (코트당)	1일	12,000	18,000	18,000	23,000	월 전용사용료는 20일분 평일요금 적용, 야간사용 5할 가산
목포시궁도장	1회 4시간	20,000	30,000	40,000	60,000	1인당 1사대 주간

※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시간 1시간당 해당 전용료의 20%를 가산한다.

[별표 3]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제1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개 인			단 체			비 고
		어른	청소년 군인	경노.어린이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수급자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어른	청소년 군인	경노.어린이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수급자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목포실내 체육관	1회	1,300	1,000	900	1,000	800	700	
실 내 수영장	일권	2,500	2,000	1,500	2,000	1,500	1,000	1일 2시간
	월회원	45,000	35,000	25,000				
	월강습	10,000원 적용						
다이빙장	2시간 기준	5,000	4,000	3,000	4,000	3,000	2,000	
정구장 테니스장	일권 주간	2,000	1,500	1,000	1,500	1,200	800	1일 3시간
	일권 야간	주간 사용료에 5할 가산						
	월 회원	30,000	22,500	10,000				
	월 강습	70,000						
부주산 국제 파크골프장	4시간 기준	4,000	3,000	2,000	3,000	2,500	2,000	목포 시민 1일 4시간 무료 이용 사용료 부과
부주산 국제 클라이밍센터	4시간 기준	5,000	4,500	4,000	4,000	3,500	3,000	
유달검도 체육관	월회원	100,000원 적용						

※ 테니스장 월회원은 주간금액 × 15일을 기준으로 하였음.

[별표 4]

체육시설 중계방송료 (제1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중계방송		녹화방송		영화촬영
	TV	라디오	TV	라디오	
목포실내체육관	40,000	30,000	20,000	15,000	TV중계 방송료와동일
실내수영장					

〔별표 5〕

체육시설 부속시설 사용료 (제13조 관련)

구 분	전 광 판	라이트(조명)	음향시설
목포실내체육관	10,000원+실제사용 실제사용전기요금+(전기검침기본료×1/30×사용일)	실제사용전기요금+(전기검침기본료×1/30×사용일)	5,000원 × 마이크대수
실내수영장			
부주산테니스장	없 음	실제사용전기요금+(전기검침기본료×1/30×사용일)	5,000원 × 마이크대수

구 분	전기사용료	냉난방사용료
목포실내체육관	전기검침기본료 + 실제 전기요금	실제 전기사용료 및 유류대
실내수영장		

〔별표 6〕

체육시설 외부광고 등 (제14조 관련)

(단위 : 원)

<table>
<tr><th>구 분</th><th>애드
벌룬</th><th>선 전 광 고 게 시</th><th>비고</th></tr>
<tr><td>목포실내
체육관</td><td rowspan="2">1일 1개
5,000

1일 추가
3,000</td><td rowspan="2">소형(10m미만×1.3m)
◦ 5일이내 50,000 1일초과 5,000가산 연간 200,000
중형(20m미만×1.3m)
◦ 5일이내 70,000 1일초과 7,000가산 연간 350,000
대형(30m미만×1.3m)
◦ 5일이내 100,000 1일초과 10,000가산 연간 1,000,000</td><td rowspan="2">판매
수입액의
2할</td></tr>
<tr><td>실 내
수영장</td></tr>
</table>

〔별표 7〕

사용료 감면 (제16조 관련)

구 분		감면율(할인율)	비 고
전용사용료	1. 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훈련	80%	
	3.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어린이, 군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80%	
	4.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체육행사	80%	
	5. 시의 보조, 후원,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80%	
	6.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	80%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80%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80%	
	9.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	80%	
	1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80%	
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50%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 고
습 사 용 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보조자 1인을 포함한다.	50%	
	9. 「목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한 헌혈증서를 소지한 사람	10%	
	10. 의사진단서에 의한 여성	10%	
	11. 다자녀 지원 해당부서와 검토	10%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0%	

※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한다.

※ 사용료 감면은 신청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적용한다.

목포시 공고 제2023 - 1682호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 법 예 고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16.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시립예술단 노조와 2022 임금협약이 23. 4. 3. 체결됨에 따라 정액급식비 인상과 가족수당 신설로 목포시 인구 정책에 부응, 출산을 장려하고 목포시립예술단원의 사기 진작 및 소속감을 증대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액급식비 인상 (40,000원)

- 기존 100,000원 → 140,000원

❍ 가족수당 신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름

3. 규칙 개정안 : 별첨

4.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6. 관련부서의견

❍ 부패 영향 평가 검토 : 해당없음

❍ 규제심사(심의) 대상여부 검토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 2023. 10. 16. ~ 2023. 10. 23. (7일간)

8 의견제출 ※ 의견제출서 별도 첨부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58613,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문화예술과)
-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7), 직접방문 등

※ 보내실 곳 : 〔우58613〕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용당동) 목포시청 3층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문화예술과(☎ 061-270-8096, FAX 270-3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정액급식비는 월 100,000원으로 하며”를 “복리후생비는 “별표 11”에 따라 지급하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액급식비”를 “복리후생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정액급식비란 단원의 복리후생”을 “복리후생비란 단원의 복리증진”으로, “수당”을 정액급식비와 가족수당”으로 한다.

[별표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별표11”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실비보상) ①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수당, 여비 등의 기준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6, 별표7”과 같이 하고, 정액급식비는 월 100,000원으로 하며 주택보전수당은 월 200,000원으로 한다.	제5조 (실비보상) ①---------- ---------- ---------- ---------- 복리후생비는 “별표11”에 따라 지급하며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 (상임단원 월 급여의 구분)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는 본봉, 예능수당, 직책수당, 정액급식비, 주택보전수당으로 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6조 (상임단원 월 급여의 구분) ---------- ---------- 복리후생비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액급식비란 단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4. 복리후생비란 단원의 복리증진 ---------- 정액급식비와 가족수당----------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별표 11]

복리후생비(제5조 관련)

구 분	수당액	비 고
정액급식비	140,000원	
가족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23 - 1683호

「목포시시립국악원설치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시립국악원설치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16.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목포시립예술단노조와 2022 임금협약이 23. 4. 3. 체결됨에 따라 목포시립예술단체의 실비보상 기준에 맞춰 정액 급식비 인상 및 가족수당을 신설하여 시립국악원의 사기진작과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목포시시립국악원설치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띄어쓰기)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을 「목포시 시립국악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 정액급식비 인상

- 기존 100,000원 → 140,000원 (40,000원 인상)

❍ 가족수당 신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름

3. 규칙 개정안 : 별첨

4.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 :「목포시 시립국악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6. 관련부서의견

❍ 부패 영향 평가 검토 : 해당없음

❍ 규제심사(심의) 대상여부 검토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 2023. 10. 16. ~ 2023. 10. 23. (7일간)

8. 의견제출 ※ 의견제출서 별도 첨부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58613,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문화예술과)
-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7), 직접방문 등

※ 보내실 곳 : 〔우58613〕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용당동) 목포시청 3층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문화예술과(☎ 061-270-8096, FAX 270-3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시립국악원설치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시립국악원설치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목포시시립국악원설치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목포시 시립국악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정액급식비”를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실비보상) ①공무원이 아닌 국악원의 교수 및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하되 지급하는 기본수당, 직책수당, 연구수당, 예능수당, 정액급식비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 ⑥ (생 략)	제6조 (실비보상) ①---------- ---------- ---------- ---------- ----------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 ② ~ ⑥ (현행과 같음)

〔별표 2〕

교수 및 강사 실비보상 기준

(단위 : 원)

구 분	계	기본수당	직책수당	연구수당	예능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원 감	**1,566,700**	**1,098,300**	127,900	64,000	176,50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교 수	**1,438,800**	**1,098,300**		64,000	176,500	140,000	
강 사	**1,190,300**	**913,800**			176,50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목포시시립국악원설치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